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새 정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차질없는 이행과 ‘고령사회 대비 및 노후생활 보장’ 대응체계 강화에 따라

나. 지역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치매안심센터 신축·운영과 치매노인 가구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 관련 실행과제 수립·시행을 위한 한시 전담기구 신설 및 전담인력 증원을 통하여

다.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과 최고 수준의 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1,663명 → 1,667명(+4명)

- 집행기관 : 1,635명 → 1,639명(+4명)
- 의회사무기구 : 28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1) 정원 총계 : 1,663명 → 1,667명(+4명)

2) 일반직 계 : 1,625명 → 1,629명(+4명)

- 5급 : +1명
- 6급이하 : +3명

다. 한시 정원표(안 별표 4)

1) 정원 총계 : 3명 → 4명(+1명)

2) 일반직 계 : 3명 → 4명(+1명)

- 5급 : +1명

3) 존속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63명이며”를 “1,66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9명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치매안심지원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 무 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67	1,66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29	1,629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82	31	3	4	5	12	27
6급이하 소계	1,527	1,527					
전문경력관 소계	9	9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총 계	4	일반직 : 5급 2명, 6급 이하 2명		
전국체전추진단	3	일반직 : 5급 1명, 6급 이하 2명	2020. 5.31	전국체전 준비
치매안심지원단	1	일반직 : 5급 1명	2018.12.31	치매국가책임제 전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663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67명</u> 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5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9
<u>명</u>	<u>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 ⑤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8.7.3., 2013.12.4.>

③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새 정부 대선 공약사항 ‘치매 국가 책임제’ 차질없는 이행과 국정과제 ‘고령사회 대비 및 노후생활 보장’ 대응체계 강화에 따라 치매노인 가구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단가와 '17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4%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 '18년도 봉급 인상률 미정

나.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4명을 증원할 경우 '18년 188,646천원을 포함하여 '22년까지 850,11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총 비용	188,646	157,168	162,512	168,037	173,750	850,11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시 비	188,646	157,168	162,512	168,037	173,750	850,113
합 계	188,646	157,168	162,512	168,037	173,750	850,113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안전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혜진(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공무원 정원 증원 4명

2. 비용추계 방법

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 4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직급별 1인당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18년부터 '22년까지 201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4%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유 익 수
	담 당	김 태 영
	담 당 자	김 혜 진 (480-6773)